

영신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2007.01.08

개정 2023.08.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영신 임직원 윤리강령(이하 “강령” 이라 한다)은 영신 임직원(이하 “임직원” 이라 한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강령은 영신(이하 “영신” 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직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 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영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영신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신 규정과 국내 제반 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 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영신의 경영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영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 5 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급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6 조(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영신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이해충돌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신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영신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영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8 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공·사 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영신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신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영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 ① 임직원은 직장인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 또는 소속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영신은 국내 관련법령과 영신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임직원은 관련 법령, 사규 또는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위반 또는 우려사항을 내부고발 담당부서에게 신고한다.

② 회사는 위와 같이 위반 또는 우려 사항을 신고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보복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4조(고객 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5조(고객 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품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6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7조(고객정보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정보를 회사의 기밀 사항 이상의 기준으로 취급하고 관리하며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② 고객의 개인 정보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만 열람 한다.

③ 개인 정보는 반드시 고객이 동의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하며, 불필요해진 고객의 개인정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제 4 장 협력사에 대한 윤리

제18조(영신 규정 및 국내 관계 법령 준수)

임직원은 영신의 제반 업무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영신 체규정 및 국내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9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업체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20조(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영신이 시행하는 계약, 자재 및 용역구매, 중기사용 등의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⑤ 정보 수집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확보 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1조(임직원 존중)

영신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2조(공정한 대우)

영신은 교육,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3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영신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4조(삶의 질 향상)

- ① 영신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영신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25조(자산 보호)

- ① 회사 자산의 고의적인 파손, 횡령, 절도는 고용 계약 해지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인가 받지 않은 정보의 이전, 유출은 물론 비용과 관련된 허위 보고도 허용 되지 않는다.
- ② 회사 자산의 외부 이용이나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용시 반드시 관리자와 상의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26조(사회발전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영신을 건설한 기업으로서 성장 발전시키고 영신이 추구하고 시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신기술 연구 개발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영신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① 임직원은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영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영신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영신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영신 규정 및 제반 국내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8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직원화합)

모든 임직원은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직원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8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대표이사, 임원 및 각 소속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9조(교육)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의식과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위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발령 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정부서 또는 특정인을 정하여 이 강령의 교육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및 징계)

-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 임원 및 각 소속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영신의 영신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정착 및 강령의 실천·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영신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7.01.0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8.01.)

(시행일) 이 강령은 2023.08.01.부터 시행한다.